##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1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민형배·서미화·박지원

정동영 · 이개호 · 김용민

정준호 • 이정문 • 이수진

정성호 · 이용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계엄해제도 늦게 공고했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 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면 계엄 해제 및 해제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불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4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
	<u>다.</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u>지체 없이</u> 계	<u>즉시</u>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국회의 계엄 해</u>
	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지
	<u>아니하면 계엄 해제 및 해제</u>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u>불체포특권</u> )	제13조(국회의원의 <u>불체포특권</u>
(생 략)	<u>등</u> )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
	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 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